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직자 재산 등록시 사모펀드 별도 항목으로 등록〉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38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12.
3. 회부연월일 : 2025. 9.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현금, 예금, 증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함.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등 공개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등의 재산 등록사항 등을 공개함.

그런데 현재 사모펀드는 예금에 포함하여 등록하기 때문에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의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예금의 총액에 포함되어 표시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모펀드 내역이 공개되도록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별도의 항목으로 등록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3호라목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대상재산에 사모펀드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개정안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별도의 항목으로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호라목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생략)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3.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설>	라. <u>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u>
라. ~ 카. (생략)	마. ~ 타. (현행 라목부터 카목

4. ~ 6.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u><신설></u> 8. ~ 15. (생략) ④ ~ ⑦ (생략)	까지와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③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사모펀드는 평가액</u> 9. ~ 16. (현행 제8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을 등록하거나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검토의견

현행법은 재산등록 및 공개(제2장),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제2장의2), 선물신고(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제4장)의 제도적 수단을 통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취지의 법률임.

재산등록 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감사·세무 등 일부 분야는 4급 미만 공무원),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 일정한 공직자에게 동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 중 법률에서 정하는 재산을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는 공직윤리 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 기관 등이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의 확인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재산 증식의 억제를 도모하고 있음.

재산공개 제도는 재산등록의무자 중 고위공직자(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등)에 대하여 재산등록을 넘어 등록된 재산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재산 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 주요사항》

□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제3조제1항 각 호)

-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감사·세무 등 일부 분야는 4급 미만 공무원),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제10조제1항 각 호)

-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고등법원 부장판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중장 이상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 공기업의 장 및 일부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 등록대상재산(제4조)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 재산, 비영리법인 출연 재산과 외국 소재 재산 포함
- ※ 단,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고지거부 가능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다음 각 목의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골동품·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주식매수선택권
- 가상자산

□ 재산의 등록시기 및 등록기관(제5조)

- 등록시기
 - (최초등록)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정기변동신고) 전년도 재산변동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신고
 - (수시변동신고) 등록기준일의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등록기관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자치단체, 시·도교육청
 - 정부의 부·처·청은 그 부·처·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 포함)

자료: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개정안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와 관련하여, 등록대상재산 중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별도의 항목으로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재산이 공개되는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도록 하여 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과 이를 통한 사익 추구에 관하여 제기될 수 있는 국민의 의혹이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 취지를 갖고 있음.

현재 사모펀드 가입에 관한 사항은 다른 간접투자상품 등과 함께 예금 항목의 세부 항목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탁기관’란에 ‘자산운용사’, ‘예금의 종류’란에 ‘펀드명’, ‘비고’란에 ‘사모펀드 유형’(예: 전문투자형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제10조¹⁾에 따라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

1)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공보를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7.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
- 8의2.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은 별도의 항목으로 공개되지 않고 예금 항목에 포함되어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 펀드 외 수익증권, 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한 투자자예탁금 등과 함께 예탁기관별 총액으로 공개되고 있음.

그런데 사모펀드는 소수의 비공개로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로 공모펀드와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어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한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공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 제4조제2항은 등록대상 재산에 관하여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2)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
9.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제4호·제5호·제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된다.
 11.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제6조제2항의 경우에만 공개한다)

②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개대상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자가 공개대상이 아닌 직위로 전보되었다가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최종 공개 이후에 변동된 사항만을 공개한다.

③·④ (생략)

(수표를 포함) 등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4)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열거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2.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다음 각 목의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 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
 - 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
 - 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 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권
 - 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무
 - 바.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
 - 사.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 아.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 자.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차.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카.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4.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5. 주식매수선택권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

현재 등록재산의 공개 시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의 예금”과 같이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의 세부 항목 형태로 보유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예금 항목 등록 시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사모펀드 가입 내역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모펀드 가입 내역도 세부 항목의 형태로 별도로 구분하여 공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재산의 종류와 항목을 세분화하여 그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함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기본권 제한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에 대한 비교 형량을 통해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봄.

참고로, 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입법청원(청원번호 제2200033호, 김광태 외 53,898인)이 2024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음.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공개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등록대상재산에 명시하고 별도의 항목으로 등록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2